

스푸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(제8조제1항 본문 관련)

구분	업무 또는 무선설비	안테나공급전력에 대한 감쇠값(데시벨)
1	우주업무	$43+10\log(PY)$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
2	무선측위업무	$43+10\log(PX)$ 또는 60dB 중 덜 엄격한 값
3	텔레비전방송업무	$46+10\log(PY)$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이고, VHF 무선국은 평균전력(PY) 1mW를 UHF 무선국은 평균전력(PY) 12mW를 각각 초과하지 않을 것
4	초단파방송업무	$46+10\log(PY)$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이고, 평균전력(PY) 1mW를 초과하지 않을 것
5	중파(MF)/단파(HF) 방송업무	50dBc이고, 평균전력(PY) 50mW를 초과하지 않을 것
6	단측파대 이동국	침두포락선전력(PX)보다 43dB 낮을 것
7	30MHz 대역 미만의 아마추어 업무 (단측파대 통신방식을 포함한다)	$43+10\log(PX)$ 또는 50dB 중 덜 엄격한 값
8	30MHz 대역 미만의 업무 (우주업무, 무선측위업무, 방송업무, 단측파대 이동국, 아마추어 업무는 제외한다)	$43+10\log(X)$ 또는 60dBc 중 덜 엄격한 값. 이 경우 단측파대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를 PX로, 그 외의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X를 PY로 한다.
9	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	$56+10\log(PY)$ 또는 40dBc 중 덜 엄격한 값
10	비상 송신설비	제한 없음
11	그 밖의 업무 및 무선설비	$43+10\log(PY)$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

비고

- 스푸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허용치 측정방법은 국제전기통신연합권고 SM.329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. 다만, 레이다의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 M.1177의 최신 버전에 따른다.
- 스푸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측정기준대역폭은 주파수 9kHz~150kHz에서 1kHz로, 150kHz ~ 30MHz에서 10kHz로, 30MHz ~ 1GHz에서 100kHz로, 1GHz 이상에서 1MHz로 한다. 다만, 우주업무는 주파수와 상관없이 4kHz로 한다.
- 기호 dBc는 무변조 반송파 전력을 기준으로 한 dB를 말한다. 다만, 반송파가 없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전력(PY)을 기준으로 한 dB를 말한다.
- 평균전력(PY) 및 침두포락선전력(PX)의 단위는 와트로 한다.
- 아마추어업무에 사용되는 지구국은 30MHz 대역 미만의 아마추어 업무의 기준을 적용하고, 지구로부터 2×10⁶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우주업무를 하는 우주

국은 스푸리어스 영역 불요발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.

6. 혼신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표에 규정된 스푸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7. "특정소출력용 무선기기"란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기기를 말한다.
8. "비상송신설비"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, 비상위치지시용 송신기, 개인위치지시용 표지설비, 수색구조용 트랜스폰더(질의응답장치), 생존정의 송신설비, 비상 시 사용하는 육상, 항공, 해상 업무용 송신설비를 말한다.
9. 대역외영역과 스푸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은 필요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필요주파수대역폭의 250퍼센트만큼 떨어진 주파수로 한다. 다만, 협대역·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경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.